

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김재진 의원
나. 의안번호 : 제2768호
다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26일
라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
2. 제 안 이 유

-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안전관리 조직 구성, 안전 점검 방법 및 주기, 재난사고 조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제2항)
나.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8조제3항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,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는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4년에 제정('24.3.26)되었음.

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‘자연휴양림 조성’ 사업을 2개소에서 추진 중이고 이 중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(운영) 예정¹⁾임에 따라 ‘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’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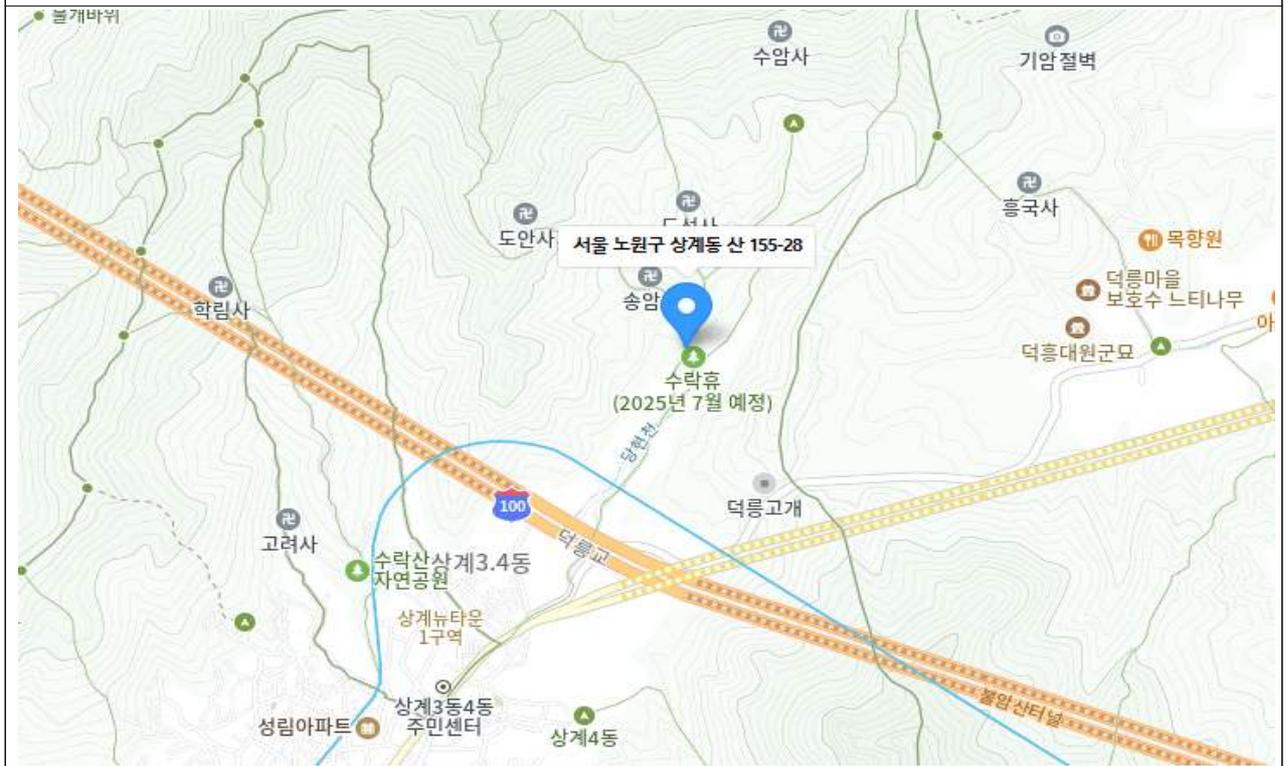
- 안 제8조제2항은 ‘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’, ‘직원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’, ‘안전점검의 방법 및 주기’ 및 ‘사고 발생 시 조치방안’ 등을 ‘안전관리계획’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며, 안 제8조제3항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점검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견 없음.
- 자연휴양림은 산림이라는 위치적 특성상, 이용자 과실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난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고려한 재난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1) 수락산 자연휴양림: 위치(상계동 산155-28), 규모(9,800㎡), 건축면적(1,466.62㎡), 18동 25실(최대 82명), 내용(숲속의 집, 트리하우스, 산책로 등)

<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>



조감도



지도 위치도